

특별시험 운영에 관한 규정

□ 제정 : 1998. 05. 21

□ 개정 : 2017. 05. 01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특별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시험대상자 및 학점인정) ① 특별시험은 전학과 1학년의 희망학생을 시험 대상으로 한다.

② 특별시험에 합격한 자에게는 해당과목의 학점을 이수 취득한 것으로 하여 학점을 인정한다.

제3조(시험과목) 특별시험의 과목은 영어, 제2외국어, 일반수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시험과목을 조정할 수 있다.

제4조(취득학점) 특별시험에 의하여 취득할 수 있는 학점은 12학점 이내로 하며, 매학기 취득 학점은 6학점 이내로 한다.

제5조(시험관리) ① 특별시험을 위하여 과목별 시험 분과위원회를 두며, 교무입학처장이 그 위원장이 된다.

② 과목별 시험 분과위원회는 시험문제의 출제, 채점 등 제반 시험관리를 담당한다.

③ 필요에 따라 구술고사를 병행하여 평가할 수 있다.

제6조(시험시기) 특별시험은 매학기 시작일 전후 10일 이내에 실시한다.

제7조(응시절차) ① 특별시험의 과목, 시기 및 절차 등 시험요강을 시험실시 15일 전에 공고한다.

② 특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응시료와 함께 응시원서를 학부(과)장의 승인을 거쳐 교무입학처에 제출한다.

제8조(합격기준) 특별시험은 100점 만점에 80점 이상 얻은 자를 합격자로 한다.

제9조(성적처리) ① 특별시험으로 취득한 성적은 성적부에 기록되며 해당과목을 이수한 것으로 하되, 그 평점은 일반시험 기준에 의한다.

② 전항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학기별 평점평균의 산정에 포함되지 아니한다. 다만, 전체 졸업 평점평균 산정에는 이를 산입한다.

③ 전조에 의하여 취득한 학점은 수험자의 희망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5월 21일 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규정은 2017년 5월 1일 부터 시행한다.